



# 학교폭력 예방 연수

완주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

1.

## 학교폭력이란

"학교폭력"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, 폭행, 강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 및 성폭력,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 <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>

2.

##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

### 가. 피해학생의 경우

- 1)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.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.
- 2)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피해사실을 은폐, 축소하지 마세요.
- 3)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.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.
- 4) 도피하지 마세요. 문제회피, 침묵, 전학,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.
- 5) 아이를 응원해주세요. '절래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'라며 지지해주세요.
- 6) 도움을 요청하세요. 먼저,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.
- 7) 증거를 확보하세요. 문자메세지, 이메일, 음성녹음, 상해진단서 등

### 나. 가해학생의 경우

- 1) 부인하지 마세요.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.
- 2)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.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.
- 3) 정당화하지 마세요.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.
- 4) 포기하지 마세요.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.
- 5)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. 아이와 친구,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.
- 6) 진심으로 사과하세요.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.
- 7) 화해,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. 전문가 상담,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.

3.

##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

- 1) 117 학교 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
  - ① 1 :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
  - ② 1 :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
  - ③ 7 : 학교폭력 자살률 1위
- 2) 온라인 신고 : [www.safe182.go.kr](http://www.safe182.go.kr)
- 3) 스마트폰 앱 : 안전드림
- 4) 문자 : #0117



# 아동학대 예방 연수

완주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

1.

## 아동학대란

“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”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<아동복지법 제 3조제 7호>

2.

## 아동학대의 후유증

신체적 손상, 지능 및 인지기능의 손상,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/이상, 학교 부적응, 정신병리, 애착형성의 붕괴,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, 자학적, 자기 파괴행동 등

3.

## 아동학대 신고요령

\*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.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(아동복지법 제 26조)

### 가. 1 STEP

-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
-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
-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
-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

### 나. 2 STEP

-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
- 아동을 안정시키고,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
-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

### 다. 3 STEP

-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
-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
-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
-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
-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

◆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( 1577-1391 )

◆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( 129 / 112 )